KMA 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㉾04427 서울 용산구 이촌로46길 37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42/전송(02)793-8702
의무법제국 국장 곽석철(6573) **의무팀장** 김철욱(6542) 팀원 김경덕(6582) E-mail : kam008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25 - 09078호

시행일자 2026. 11. 11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총리령 제2170호) 개정·공포 알림(식품의약품안전처)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-7797(2026.11.10.)

3.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총리령 제2170호)이 2026년 11월 10일자로 공포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,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개정된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은 2026.11.10.자 관보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(www.mfds.go.kr > 법령정보 > 법, 시행령, 시행규칙) 및 ,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음 -

○ 주요 개정내용

- 폐업 신고시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계획을 허가관청에 제출
- 마약류 취급 자격상실자가 보유중인 마약류를 폐기 처리하는 절차 신설
- 종업원 지도·감독을 소홀히 하여 마약류 도난·유출이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
- 몰수마약류의 폐기 및 처분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절차 명확화
- 자가치료 목적으로 국내 처방받은 마약류를 휴대하고 출입국 하는 경우 취급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

※ 붙임

1.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.
2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법률(총리령 제2170호)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